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1

2021. 11. 24.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4. 김형대 의원 등 7명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형대 의원)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제2장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효섭)

○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강남구청장에서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던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규칙의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됨

○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수정의견(안)**

제 정(안)	수 정(안)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의회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삭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의장은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의 ---.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의회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 1·2·3. (생략)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삭제)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 1·2·3. (제정안과 같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11호

제안일자 : 2021. 11. 24.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분리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수정함

2. 수정내용

가. 기관장명을 명확히 함(안 제4조, 안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제12조제1항, 안제1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하나만 남은 항을 항 표시 없는 본문으로 수정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장은”을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로,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 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부서의 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으로, “소속부서의 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의회의 장”을 “의장”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의회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 ---------- ---------- 사무국장---------- ------. ② 의장---------- ---------- ----------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

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의회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 ----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 -- ---------- ----. ------- 사무국장----- ---------- ---------- 의장 -------- ---------.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생 략)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원안 제1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김형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김형대·허주연·이상애·이도희·전인수·한윤수·박다미(이상7인)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22. 1. 13.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제2장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9조)

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 질 등 급	가산지급배수
1급 내지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봉급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

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의회의 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

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

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의회의 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속		② 공무원의 구분		③직(계·등)급	(호봉)
④성명	(한글)	⑤생년월일			
	(한자)	⑥주 소			
⑦전화번호 (자 택)		⑧근속기간	년 월	⑨정 년 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산 출 내 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조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

⑭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소속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선 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에 V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2.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⑩은 해당란에 V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⑩, ⑪, ⑫, ⑬은 당해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부서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의 구분		직(계·등)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정 년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 출 내 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 . .

신청인 (인)

확 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소속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원인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귀하